

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(안전검토) 및 기간제(통·번역, 사무보조) 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

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(안전검토) 및 기간제(통·번역, 사무보조) 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16일
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

1 서류전형 합격자

분야	합격자(전화번호 뒷자리)
안전검토 (재정경제심사과)	신○진(3443), 조○일(6158)
통·번역 (국제교류담당관실)	김○서(7054)
사무보조 (교육지원과)	윤○경(4185), 김○진(2072)

※ 서류전형 합격자는 응시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개별 연락

2 면접시험 일정

면접대상자	면접일시	장소
서류전형 합격자	'24. 4. 18.(목) 15:00~	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정부세종청사 7-2동(국민권익위원회) 5층 * 집합장소 : 정부세종청사 7-2동 1층

※ 응시자는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를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, **반드시 면접 시작 시간 30분 전까지 면접장소 1층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 (출입 시 담당자가 동행해야 하니 신분증을 지참하여 1층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)

3

면접시험 준비물

- (면접일 당일)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- (이메일 제출) 아래의 서류를 '24. 4. 17.(수)까지 suvn@korea.kr 로 제출
 - (공통)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(붙임)
 - (취업지원 대상자)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
 - (사회형평 대상자) 증빙서류 1부

4

최종합격자 발표

- 2024. 4. 22.(월) 예정
- ※ 결격사유 조회 등 채용준비를 거친 후 24. 5. 1.(수) 채용 예정입니다.
(단, 채용준비 절차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)

< 유의사항 >

- 면접에 불참한 경우, 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면접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또한 합격자 통지 후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채용하기에 부적절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5

문의처

-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(☎ 044-200-7185)

[붙임] :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.

부패방지권익위원회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해임요구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

1.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*공직자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2. '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'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 중, 퇴직 후 불문) *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 *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: 비해당 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·여비 부당수령: 해당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3-1.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3-2. 위 퇴직일(당연퇴직·파면·해임일)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)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4-1.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4-2.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 내)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4-3. 권익위법('16.3.29. 제14145호로) 시행('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)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1, 2, 3-1, 3-2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1호)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1, 2, 4-1, 4-2, 4-3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2호)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
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.

20 년 월 일

생년월일 . . .

지 원 자

(서명)